

**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(제10조제1항 관련)**

구 분	평가항목	배점한도	비 고
계		100	
기술능력 평가	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의거 해당 평가기준을 적용	80	※ 평점 = 80/100×평가 점수(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)
입찰가격 평가		20	※ 평점산식 : 아래

주) 입찰가격 평점산식

가)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

· 평점 =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×(최저입찰가격/당해입찰가격)

\* 최저입찰가격 :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

\* 당해입찰가격 :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

\*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,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

나)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

· 평점 =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× (최저입찰가격/추정가격의80%상당가격) + [2 × ((추정가격의80%상당가격 - 당해입찰가격)/(추정가격의80%상당가격 - 추정가격의70%상당가격))]

\* 최저입찰가격 :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

\* 당해입찰가격 :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,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

\*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,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

다)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

[부표]

고시금액 미만 건설엔지니어링 당해 사업수행능력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

평가항목	세부평가사항	배점기준	평가기준				
계		100					
참여 기술인 (참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)	소계	50	- 설계·건설사업관리·시공 등 건설분야 경력·실적을 동일하게 평가				
	- 사업책임기술인	25					
	·기술인등급 (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등급)	(7)	특급	고급	중급	초급	
			7	5	3	0	
	·경력	(8)	12년이상	10년이상	8년이상	6년이상	6년미만
			8	6	4	2	0
	·건설엔지니어링 실적	(10)	120개월 이상	108개월 이상	96개월 이상	84개월 이상	84개월 미만
			10	8	6	4	2
	- 분야별 책임기술인	25	-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				
	·기술인등급 (분야별건설사업관리 기술인등급)	(7)	고급		중급	초급	
		7		5	3		
·경력	(8)	9년이상	7년이상	5년이상	5년미만		
		8	6	4	2		
·건설엔지니어링 실적	(10)	84개월이상	72개월이상	60개월이상	60개월미만		
		10	8	6	4		
유사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(5천만원 이상 건설 엔지니어링에 적용)	-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수행실적	34	-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				
	·건설엔지니어링 수행건수	(17)	6건이상	4건이상	2건이상	2건미만	
			17	13	9	5	
·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금액	(17)	3억원이상	2억원이상	1억원이상	1억원미만		
		17	13	9	5		
경영상태 (5천만원 미만 건설 엔지니어링에 적용)	- 경영상태	34					
	·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(자기자본/총자산)/ 기준비율	(17)	100%이상	90%이상	80%이상	70%이상	70%미만
			17	15	13	11	9
·최근년도유동비율 (유동자산/유동부채)/ 기준비율	(17)	100%이상	90%이상	80%이상	70%이상	70%미만	
		17	15	13	11	9	
건설 엔지니어링 업무 중복정도	-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	12	-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				
	·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	(12)	1건이하	2건이하	3건이하	4건이상	
			12	8	4	0	
신용도	- 신용도	4	- 최근 1년이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				
	·기술인(건설사업관리 기술인)업무정지	(4)	·평가대상기술인(건설사업관리기술인)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5% 감점				

## 비 고

1. 참여기술인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경력·실적 평가방법 및 확인절차는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」 [별표 3] 제1호 비고 3호 및 4호를 준용한다. 다만, 관계규정에 별도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2.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과 관련하여 공동도급의 경우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에 의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며,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.
3.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는 해당 발주청 기준으로 잔여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.
4.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방법 등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에 따라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」 [별표 2] 내지 [별표 3]을 준용할 수 있다.
5. 5천만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'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' 평가항목 대신에 '경영상태' 평가항목으로 심사하며,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.
  - 가.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"기업경영분석"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. 다만,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.
  - 나.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"기업경영분석" 자료를 적용하되 입찰 공고시 별도 명시한다.